



## 地球環境問題와 關聯된 UR, GR, BR, TR, CR 그리고 ISO

-Uruguay Round, Green Round, Blue Round, Technology Round, Competition Roun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Relation with The Global Environment Problem -

李 春 澤\*  
Lee, Choon Taek

### 1. 序 言

우리들은 30余年만에야 비로소 文民政府를 다시 세웠다. 그것은 온 國民의 勝利인 것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文民政府는 곧 바로 變革과 改革을 내걸고, 애써 國家의 秩序를 바로 잡아 가고 있는 中인 것이다.

이제 南北對決이 끝나 東西世界가 열렸는바 이는 過去이데올로기 冷戰時代의 對決에서 理念이 아닌 東西文化의 만남에서 自然스럽게 부딪치게되는 여러 文化의 衝突로 必然的인 調和속에 急變하게되는 現狀으로써 소용돌이를 치며 새로운 世界秩序가 變動하는 過中에 時宜適切하게 내건 꼭 알맞는 캐치프레이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哲學과 비전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 哲學은 어떤 形態가 되던지 世界人類가 平和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비전은 어떠한 形態가 되던지간에 이 地球上의 平和를 創出시켜갈 調和스러운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地球를 救하는, 아니 살려야 하는 길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 하나 밖에 없으며, 他惑星을 아직

地球村의 科學技術로서는 찾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地球는 未來 後孫들에게 그들이 또 平和롭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하게끔 고스란히 물려주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어서 文民政府가 또 다시 내건 것이 그리고 現世界가 요구하는 國際化, 開放化, 世界化이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요즘 시끄러운 地球環境問題이고 國內도 마찬가지로 이에 關聯된 UR(自由貿易에 依한 市場開放), GR(環境), TR(技術), BR(勞動), CR(競爭) 그리고 ISO(國際標準化機構)等 뉴라운드 態動, 마치 복싱에서 타이틀 매치를 위한 7Round, 10Round, 12Round, 15Round를 하는 것처럼 무슨 決戰場 같은 온통 Round 天地이다.

이것이야 말로 서로 살아 남기 위한 바로 世界秩序가 變動하고자 하는 世界化의 새 秩序를 創出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들은 地球環境問題와 속속 튀어나오고 있는 수십여 Round의 實像을 알고서, Round의 링속으로 뛰어들어 챔피언쉽으로 싸워, 새 歷史創造의 一翼으로 그 對應을 對備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것은 또 앞으로 無差別 無限競爭時代에서 超一流 즉 世界第一이 아니면 살아남지

\* 地下資源開發技術士, 韓國資源研究所, 情報·政策室 責任研究員.

못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Round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들도 國家利己主義로 살아남고 永遠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先進國들과 싸울수 있어야 하므로 于先 여기서 그 輪廓을 未洽하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環境問題概念

環境問題를 말 할때 쉽게 接할 수 있는 用語는 公害란 말이다. 公害란 法律的으로 被害對象이 限定되어 나타나는 私害(public nuisance)라는 西歐法律用語를 直譯한 말로 “人間의 活動에 수반하여 發生하는 有害物質 또는 에너지가 물, 空氣, 土壤 등을 媒介로 하여 계속적인 狀態로 一般公衆의 健康 또는 地域의 自然環境에 被害를 주는 것”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처럼 公害問題란 말이 環境의 破壞와 汚染을 包括하는 用語로 使用되고 있으나 環境의 汚染을 可視적이고 具體적으로 보는가 혹은 推象的 一般的으로 보는가에 따라 前者를 “公害問題” 後者를 “環境問題”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나 環境問題에 대한 嚴格한 定義는 아직 없으며 特히 地球環境問題란 一般的으로 그 영향이 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國境을 넘어 地球規模까지 펼쳐 있는 環境問題라고 認識되고 있는데, 具體적으로는 ① 오존층의 破壞, ② 地球의 溫暖化, ③ 酸性雨, ④ 海洋汚染, ⑤ 生物種의 多樣性 減少, ⑥ 砂漠化의 進行, ⑦ 熱帶林의 減少, ⑧ 有害廢棄物의 國家間 移動, ⑨ 開發途上國에서의 環境問題 등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公害問題와 環境問題의 中道的 意味를 가진 環境汚染問題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경우가 많으며 1977년에 制定된 環境保存法에서도 公害라는 用語대신 “사람의 健康에 有害를 주거나 環境을 沮害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騒音, 振動 또는 惡臭” 등을 環境汚染이라 規定하고 있다.

## 3. 環境問題에 對한 國際的 關心

20世紀를 마감하면서 온 人類에게 단 하나 뿐인 地球를 汚染으로부터 保護하자는 움직임이 先進國을 中心으로 活發히 展開되어 共感帶를 形成하더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環境問題가 가장 重要한 政治, 社會, 經濟的 問題가 되고 있다. 소련의 체르노빌에서의 放射能 落塵, 北部유럽과 캐나다에서의 酸性雨, 라인江에서의 有毒性化學物質, 오존층의 週期的인 枯渴, “溫室效果(green house effects)”와 地球의 溫暖現象, 아마존 地域의 森林毀損, Torry Canyon, Amoco Cadiz 및 Exxon Valdez의 坐礁로 인한 石油流出 등 世界的 關心을 불러온 많은 國際環境侵害의 例가 있다.

그러나 報告되지 않은 地球汚染의 加速化 現象이 指摘되기도 한다. 美國 全域의 湖水 沈澱層과 캘리포니아의 시에라레마다 山岳地域의 萬年雪에서까지 납이나 수은 및 카드뮴과 같은 有毒性 금속이 발견 된다는 것은 그들 유독성 物質의 濫用에 대한 심각성을 일러준다.

더욱이 環境汚染物質이 전혀 使用되지도 않았던 南極이나 그린랜드에서도 그러한 物質이 發見된다는 것은 아주 衝擊的이다. DDT 같은 殺蟲劑가 이들이 使用되는 地域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나 펭귄 및 물개의 脂肪質에서 發見된 例도 있다.

國家環境에 對한 國際的 關心을 歷史적으로 본다면 國際環境問題는 最近에 問題가 아니라 約 200年前 産業革命이 시작할 때부터의 問題라 할 것이다. 特히 移動性 魚類나 철새의 保護 및 海洋汚染의 防止에 대한 여러 條約들이 1800年代 初부터 1970년까지 締結되어, 이 分野에 있어서 國際的 關心의 깊은 歷史를 알 수가 있다. 이들 國際環境保護를 위한 國際協力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1972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開催된 人類環境에 關한, UN會議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와 1992年 브라질의 리오에서 개최된 環境과 開發에 關한 UN會議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다.

한편 1992年 現在 世界人口인 約55億의 사람

들이 21世紀 初가 되면 그 2배에 이르게 될 展望이어서 그들 人口에 必要한 産業化, 物資輸送 등을 통한 地球環境汚染에 대한 深刻性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 4. 環境汚染原因과 展望

地球環境汚染問題의 要因은 多樣하나 代表的으로 人口의 增加, 都市化, 産業化, 産業構造의 變化, 技術革新, 軍事訓練 및 戰爭 등이 指摘되고 있다. 特히 나라가 推進하고 産業構造의 變化가 農業爲主에서 에너지 多消費 産業인 工業中心(重化學工業)으로 移轉됨에 따라 大氣汚染物質, 工場廢水, 産業廢棄物 등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環境汚染은 加速化되고 있다. 그리고 技術은 環境破壞의 技術과 環境改善의 技術革新으로 나눌 수가 있다. 環境破壞의 技術이란 새로운 生産方法의 導入이나 또는 새로운 製品을 만들어 내기 위한 科學的 및 工學的 知識의 發展 및 이 知識의 實用化가 環境에 不定的 效果를 미칠 科學技術上의 變化를 意味한다. 보기를 들면 合成有機化合物質의 開發이란 技術革新은 經濟成長이나 消費生活에 큰 寄與를 했으나 궁극적으로 環境汚染을 加速化시켜 왔다.

한편 全世界 科學者들이 認定하고 있는 Business As Usual Scinario(BAUS: 어떤 特別한 措置가 없이 現在의 추세가 그대로 維持된다고 假定하는 시나리오)에 의한 二酸化炭素 放出量은 向后 30~40年 以內에 두배로 增加할 것이며 地球環境의 汚染 추세는 다음과 같이 展開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1) 二酸化炭素, 메탄가스, 鹽化佛化炭素數(CFCs), 亞酸化窒素 등의 溫室效果氣體들의 大氣中 濃度는 人間活動에 起因하는 放出에 의해서 劃期的으로 增加하게 될 것이다.

2) 모델링研究와 實際觀測, 敏感度分析 등에 의해서 얻어진 證據들은 二酸和炭素 濃度가 두배로 增加하면 地表面의 平均氣溫이 1.5℃에서 4.5℃ 上昇할 것으로 豫想된다.

3) 地表面의 大氣溫度는 지난 100年間 全世界的으로 平均 0.3℃~0.6℃ 上昇하였다.

4) 現在의 環境汚染水準이 維持된다면 向后 氣溫上昇速度는 10年마다 0.2℃ 내지 0.6℃(平均 0.3℃)程度일 것으로 豫想된다.

5) 氣溫上昇에 의한 海洋水面의 上昇은 向后 10年마다 2~4센티미터에 이를 것으로 豫想된다.

6) 先進國의 二酸化炭素 放出量은 1985年 이후 거의 停滯된 水準이나 開發途上國들에서는 人口增加와 經濟成長으로 向后 30~40年 동안 繼續增加하여 特別한 措置가 取해지지 않는다면 西紀 2010年, 2015년에는 開發途上國들의 二酸化炭素 放出量은 先進國들의 그것과 同等한 水準에 이를 것이다.

表1. 世界各國의 二酸化炭素 排出量

국별	총배출량 (탄소환산백만톤)	점유비 (%)	1인당배출량 (탄소환산톤)
미 국	1,310.2	22.23	5.3
소 련	1,086.0	18.43	3.8
중 국	609.9	10.35	0.6
일 본	269.8	4.58	2.2
서 독	182.7	3.10	3.0
인 도	163.8	2.78	0.2
영 국	152.5	2.59	2.7
폴 란 드	125.3	2.13	3.3
캐 나 다	119.4	2.03	4.6
이탈리아	98.1	1.66	1.7
동 독	89.3	1.52	5.4
프 랑 스	87.3	1.48	1.6
멕 시 코	83.7	1.42	1.0
남 아 공	77.5	1.32	2.3
호 주	65.8	1.12	4.0
체 코	63.7	1.08	4.1
루마니아	60.2	1.02	2.6
한 국	55.8	0.95	1.3
브 라 질	55.2	0.94	0.4
스 페 인	51.5	0.87	1.3
기 타	1,085.3	18.42	-
계	5,893.0	100.0	1.2

#### 5. 環境問題에 關한 解決接近方法

環境論에 대한 研究分野는 매우 방대하여 統合的으로 體系化 되어 있다가 보다는 問題中心

的인 分野別로 接近方法이 提示되고 있는데 環境問題에 대한 解決方案을 大別하면 制度的 接近方法(institution approach), 國際的 解決方法(international approach), 科學技術的 接近方法(technological approach), 倫理的 接近方法(ethical approach), 教育的 接近方法(educational approach)으로 區別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環境問題에 對한 接近方法은 서로 相互關聯되어 있으므로 總體的으로 國際的 研究가 이루어져야 眞正한 環境問題 解決이 可能한 것이다.

#### 1) 制度的인 接近方法

한 나라의 環境問題와 關聯된 法制度, 經濟制度, 行政 및 政治制度 等에 관한 研究分野이며

#### 2) 國際的인 接近方法

經濟的, 政治的, 技術的, 國際法的인 國際協力에 의하여 環境問題를 地球環境의 問題 내지 地球家族의인 世界保全 建設의 問題와 適切하게 連結시켜서 다루는 立場이며

#### 3) 科學技術的인 接近方法

環境關聯技術分野는 물론 醫學, 生態學 等을 包含하는 廣範圍한 內容을 研究 對像으로 하며

#### 4) 倫理的인 接近方法

極端的인 開發倫理와 保全倫理 사이의 適切한 均衡에 對한 研究分野이며

#### 5) 教育的인 接近方法

國民에게 環境教育을 實施하여 國民들의 自發的인 協助에 의하여 環境保全의 目的을 達成하려고 하는 分野이다.

### 6. 國際環境保護協約

1972年 UN環境宣言의 採擇과 함께 UN環境機構(UNEP; UN Environment Program)가 設立되었고 最近에 와서는 UNEP 主導下에 國際環境協約의 締結이 活潑하게 推進되는 等 國際的인 環境規制가 強化되고 있다. 現在까지 이미 制定되었거나 締結된 國際環境協約은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交易에 關한

協約(1973年), 오존층保護를 위한 비엔나 協約(1985年)과 同協約의 移行을 위한 몬트리올 議定書(1987年), 有害廢棄物의 國境間 移動 統制 및 處理에 關한 바젤協約(1989年), 化學物質의 國際交易과 關聯된 改正 런던指針(1989年) 等 150余個에 達하고 있으며 1992年 6月 브라질에서 開催된 UN環境開發會議(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追加的으로 地球溫暖化 防止를 위한 氣候變化 防止協約과 稀貴動植物의 滅種防止를 위한 生物學的 多樣性協約 等이 採擇되어 1994. 3. 21자로 發效되고 1995年에 適用된다.

이러한 地球次元의 國際環境協約과는 別途로 유럽 環境協定 等 隣近國家間에도 地域環境協定을 締結하려는 움직임도 擴散되고 있어 東北亞와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에서도 美國과 日本을 中心으로 하여 環境協定締結을 위한 움직임이 展開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協約들을 CFC나 二酸化炭素 等 適用對像을 具體化하여 各國의 義務事項을 明示하고 協約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해 未加入國이나 不履行 國家에 對해서는 強力한 貿易規制措置를 加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또한 個別 國家別로도 自國의 環境保護를 위한 措置의 一環으로 汚染物質輩出基準을 強化하는 한편 一定 環境基準에 未達하는 商品에 對해서는 一方的으로 輸入을 規制하거나 輸出國들에게 포장지 等 廢棄物의 回收를 義務化하는 等の 形態로 環境規制를 實施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環境保護와 關聯된 諸般措置들은 그 形態가 國際協約이든 個別國家의 一方的인 規制이든 結局 모든 國家의 國內產業活動의 制約要因으로 作用하게 될뿐만 아니라 國際貿易패턴에도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더욱이 現在 UR協商이 妥結된 以後 環境問題는 第2의 UR對像이며 GR, BR, TR, CR 그리고 ISO 等の New Round로 끊임없이 登場하면서 精神못차리게 하고 있으며 이 地球上에서 살아남기 위한 超一流, 世界第一 아니면 건널 수 없게끔 하

고 있으며 그 對策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 1972: UN 人間環境會議 開催
- 1973: UN 環境計劃(UNEP) 創設
- 1974: 美國 科學者들의 오존층 破壞에 對한 警告
- 1987: 오존층 保護를 위한 몬트리올 議定書 採擇
- 1988: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間委員會 (IPPC)設置, 토론토會議에서 CO<sub>2</sub>減縮提唱
- 1989: 바젤協約 締結, 몬트리올 議定書 發效, 프레온가스 全面廢止 合意
- 1991: 溫暖化防止를 위한 氣候協約 論議, UN環境會議(Earth Summit)準備會議 始作, OECD 環境開發 閣僚會議 開催
- 1992: Earth Summit 準備會議 CFC, 使用規制 強化를 위한 몬트리올 議定書 加入國會議 地球環境 資金支援을 위한 導入會議, 開途國의 環境閣僚會議·리오 UN 環境開發會議
- 1994: 모로코 마라케시 UR 妥結, 議定書 採擇 署名.  
GATT 以後 새로운 WTO時代가 開幕되면서 環境과 貿易 聯繫된 規制 強化

## 7. 國際環境協約의 主要內容

現在까지 이미 締結되었거나 締結을 推進中에 있는 國際環境協約은 前述한 바와 같이 150 余個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部門別로 大氣保全, 有害物質規制, 動植物保護, 海洋環境保護, 水質保護, 自然資源保全, 等으로 分類될 수 있다. 이 가운데 貿易規制措置를 包含하고 있는 大氣保全, 有害物質規制 및 動植物保護 關聯協約들은 餘他協約에 비해 國內産業에 미치는 영향이 相對적으로 클 것으로 豫想된다.

### 1) 비엔나 協約 및 몬트리올 議定書.

오존층保護를 위한 비엔나 協約(Vienna Convention)은 人間の 活動이 오존층에 미치

表2. 部門別 國際環境協約과 貿易規制措置(1933~1990)

부 문	협약수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수
해양오염방지	41	0
어업 및 포경업규제	25	0
동식물보호	19	10
핵 및 대기오염방지	13	1
남극대륙보호	6	0
식물위생규제	5	4
매뚜기류통제	4	0
국경간수질보호	4	0
동물학대방지	3	1
유해폐기물규제	1	1
기타	6	0
계	127	17

는 영향과 오존층 破壞로 人類의 健康과 環境이 받게 될 不定的인 영향을 보다 폭넓게 理解하고 評價하기 위해 加入國間 相互 監視하고 共同研究 및 政策交換을 促進한다는 目的으로 1985年 3월에 採擇되었다. 그후 1987년에는 오존층 破壞物質의 除去에 必要한 措置, 節次 및 基準은 議定書를 통해 設定한다는 同協約의 委任措置에 의거 몬트리올 議定書(Montreal Protocol)가 採擇되어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다.

現在 몬트리올 議定書에 加入한 國家數는 83 個國에 이르고 있으며 1990年 6월의 第2次 加入國會議 및 1992年 11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第4次 加入國會議 等 2次에 걸쳐 規制對像物質數를 追加하고 減縮스케줄을 短縮하는 等 規制를 한층 強化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年 2月 27日 加入申請書를 提出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2年 5月末부터는 國內에도 몬트리올 議定書가 適用되고 있다.

### 2) 바젤協約

바젤協約(Basel Convention)은 1989年 3월 有害廢棄物이 國境間 移動함으로써 發生될 수 있는 人類健康에 對한 危脅과 環境破壞를 防止하기 위해 採擇된 有害廢棄物의 國家間 交易을 統制하는 協約으로 주로 先進國들이 부적절한 方法으로 廢棄物을 開途國에서 處理하는 行爲를 禁止하는 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 이 協約은

加入國數가 적어 發效가 遲延되어 오다가 호주가 同協約에 20번째로 加入함에 따라 1992年 5月 5日에 發效되었다.

3) 野生動物의 國際交易에 關한 協約(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 CITES)

이것은 滅種危機의 動植物에 對한 濫獲防止를 위해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들 動植物의 交易을 禁止토록 規定한 國際協約인 것이다.

4) 氣候變化防止協約

이것은 溫室가스로 指摘되고 있는 二酸化炭素, 메탄, CFC, 窒素酸化物 등이 大氣中에 누적되어 復射熱의 放出을 差斷함으로써 發生하는 地球溫暖化現狀과 氣象異變을 防止하기 위한 協約으로서 1992年 6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開催된 UN環境開發會議(UNCED)에서 採擇되었다.

이 協約은 50번째 國家의 加入에서 기탁후 90日후에 發效될 것으로 되었는데 1994年 3月 21日로 發效되었고 우리나라는 152번째로 署名하였다.

環境에 直接的인 關聯없는 國際機構들도 이 分野에 對한 活動을 하였다. 이들 機構들은 다음과 같다.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 Cultural Organization)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AO(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

World Bank.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NATO(Committee on Challenge of Modern Society)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World Wildlife Fund

ICSU(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Natural Resources

1972年の 스톡홀름會議의 結果 UN總會는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 UN環境計劃)을 創設하여 그 本部를 케냐의 나이로비에 두었다. 오늘날 UNEP는 國際環境問題에 있어서 UN體制內에서는 물론 다른 機關들과의 關係에서 中心的인 役割을 隨行한다. UNEP의 후원으로 1985年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와 1987年 Montreal Protocol이 締結되었다. 1989년에는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의 協商을 組織하였다.

UNEP는 WMO와 緊密한 協助로 地球溫暖化 등의 氣候變化를 防止하는 條約의 締結을 위해 活潑한 活動을 展開하여 지난 1994. 3. 21日로 發效시켰다.

다른 UN 그룹들도 國際環境保護를 위한 많은 活動을 하고 있다. 1983年 設置된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는 現在의 經濟開發이 后代의 人類에게 被害가 代지 않도록 한다는 “지속할 수 있는 發展(Sustainable Development)”의 概念을 發展시키는데 努力하고 있다.

5) 生物多樣性協約

最近 遺傳工學의 發達로 各種 遺傳子에 對한 새로운 經濟的 價値가 發見되면서 人口增加 및 開發行爲로 인한 生物資源의 滅種防止를 위해 推進된 生物多樣性協約은 지난 1990年 11月부터 6차례에 걸친 政府間 協商會議를 거쳐 리우會議에서 氣候變化防止協約과 함께 採擇되었고 우리나라는 同協約에 154번째로 署名하였다. 당초 이 協約은 生物種의 多樣性을 保存하기 위한 生物資源의 利用과 遺傳工學을 둘러싼 先進國間 및 先進國과 開發國間의 立場 差異로 生物資源의 保護와 利用側面에서의 調和를 規定하는 線에서 그치게 되었다.

## 8. 國際環境關聯 國際機構

1972년의 UN스톡홀름會議 以前에는 世界先進國들의 모임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EC가 環境問題에 對한 積極的인 活動을 하였다. OECD는 1970年 環境委員會를 設置하여 環境의 質을 改善하고, “污染者의 費用負擔(Polluter pays)”과 “豫防이 回復보다 더 낫다(prevention is better than repair)”라는 環境法原則을 開發하는 등 環境政策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OECD의 環境關聯 活動은 環境의 經濟的 問題, 資源管理, 國境을 超越한 污染, 騒音, 放射能 廢棄物 및 産業化學物의 取扱, 貯藏 및 運搬 등 多樣하다. 특히 國境을 超越한 污染 및 危險廢棄物에 關한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는 이 分野에서의 國際環境保護 規範의 發展에 큰 貢獻을 하였다.

EC는 1972年 Directorate for Environment, Consumer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를 設置하였다. EC는 環境問題에 關하여 會員國들을 法的으로 拘束할 수 있는 規則과 指針을 定할 수 있으며, 勸告, 決議 및 意見を 줄 수도 있다. 1970年에서 1986년까지 EC는 環境에 關하여 最少한 36件의 指針을 定하여 이 指針의 目的을 各 會員國이 國內立法을 통하여 實現시키게 하였다.

EC는 1979年 締結된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onvention 등 많은 國際環境保護條約의 當事者이기도 하다.

ECE(유럽), ECA(아프리카), ESCAP(아시아 및 태평양), ECLAC(라틴아메리카), 및 ESCWA(서아시아)의 다섯 UN地域 經濟委員會도 그들 會員國들의 經濟開發에 環境問題를 考慮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UN經濟委員會中에서 유럽國家들과 美國 및 캐나다를 包含한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지난 30年間의 大氣, 水質污染과 都市環境問題에 對한 經驗으로 가장 活潑한 環境保護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ECE의 주된 努力으로 1979年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과 그 後屬·議政書들이 採擇되

었다.

UNEP, WMO, 및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의 主張으로 1987年 創設된 UN의 政府間 氣候變化 委員會(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地球溫暖化現狀을 惹起하는 二酸化炭素, 메탄 및 酸化窒素 등에 의한 “溫室效果(greenhouse effect)” 등의 地球氣候變化의 科學的 問題를 다루고 있다. IPCC는 二酸化炭素 등의 排出을 制限하는 骨格協約의 締結에 努力하고 있다.

## 9. 國際環境法の 展望

위에서 地球環境保護 및 污染防止에 關한 國際協力を 위한 많은 條約들이 紛介되었다. UR에 버금가는 큰 影響을 줄 것이라는 豫想으로 “第2의 UR”이라고 불리는 1992年 브라질에서 의 “UN環境開發會議”는 國際環境法の 發展에서 重要한 契機를 마련하였다. 이를 包含한 앞으로의 國際環境法の 發展이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OECD의 報告書를 통하여 展望한다.

環境保護 및 越境 또는 地球全體의 污染의 防止에 關한 國際環境法の 展望은 다음의 5가지의 흐름으로 把握할 수 있다.

1) 既存의 國際環境分野의 여러 條約들의 再強化이다. 國境을 超越한 大氣污染, VOC. (Volatiles Organic Compounds), 危險廢棄物의 越境移動 및 오존층의 保護 등의 分野가 이에 屬한다.

2) OECD 및 EC 등의 活動으로 整立된 國際環境法規範이 中部 및 東部유럽의 國家들 사이에 보다 잘 組織된 協力關係가 構成되어, 유럽에서의 環境保護 및 污染防止에 큰 發展이 있게 될 것이다.

3) 環境保護에 關한 國家들의 義務를 設定함에 있어서 效果的인 目標가 設定될 것이다. 例컨데 오존층을 훼손시키는 CFC.의 使用規制에 對한 1987年 몬트리올 議定書에서와 같이 國家들은 그 使用量을 一定期間 동안 얼마만큼씩 減

少시켜야 할 것이다.

4) 우연한 汚染의 경우에도 보다 嚴格한 特定된 責任을 負擔시키고 한편 그 被害者에게 賠償의 수혜를 確實하게 하는 것이다.

5) 國際法上 새로운 概念인 “健全한 環境의 基本的 權利(fundamental right to a sound environment)”의 整立이다. 이러한 人類의 基本的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보다 綜合的인 國際環境保護의 協力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 10. UR 끝, 마라케시 會議後 變化, GR, BR, TR, CR 그리고 ISO 時代의 開幕

### 1) UR(Uruguay Round)

世界 116個國이 모여 7年間 끌어왔던 UR 協商이 마침내 妥結되었다. 特히 對外 依存도가 높은 經濟構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UR 協商結果가 우리 經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對應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UR 協商의 內容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要約說明할 수가 있다.

① 貿易에 對한 障壁을 없애는 것이다. 自由貿易의 실현을 위해 關稅를 낮추고 輸入 數量制限 등 非關稅 障壁을 除去하자는 것이다.

② 農産物에 對한 補助金制限 및 支給規模 削減과 非關稅 障壁의 關稅化, 關稅의 全般的 削減을 통한 農産物 産物 交易의 自由化를 꾀하자는 것이다.

③ 不公正한 貿易慣行을 除去하자는 것으로 덤핑行爲(國內市場 價格보다 싸게 輸出하는 行爲), 政府의 補助金 支給 등을 防止함으로써 海外市場에서 企業間에 正當당당히 競爭하자는 것이다.

④ 外國人 投資企業에 對한 輸出義務賦課, 施設材 및 原資財의 國産使用 義務 등 여러가지 制限을 없애고 知的 財産權(特許權, 著作權, 商標權 등)에 對한 保護를 強化함으로써 貿易과 關聯된 이들 分野의 새로운 國際秩序를 세우자는 것이다.

⑤ 서비스 交易을 自由化하여 金融, 保險, 海運, 流通 등 서비스 交易에 對한 새로운 國際規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以上 다섯가지의 協商結果가 앞으로 과연 우리 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關稅와 數量制限 등 貿易制限 措置를 통해 國內市場을 保護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UR 協商에 따라 이러한 障壁을 대부분 除去하여야 하는 立場이어서 그 영향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關稅의 경우 1986年을 基準으로 17.9%에서 10.6%로 引下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3年 우리나라의 平均 關稅率이 8.9%로 낮아진 점을 감안할 때 追加的으로 引下해야 할 負擔은 거의 없다.

非關稅 障壁(關稅以外的 貿易制限 措置)의 경우에도 1989年부터 7年間에 걸쳐 輸入制限을 거의 없애기로 이미 約束하였고 나머지 일부 農産品도 1997年까지 自由化 與否(事實上 自由化 日程)를 提示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UR로 인한 追加的 開放은 더우기 UR 協商에 따른 市場開放은 우리만 該當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國家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市場을 開放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輸出이 늘어나는 肯是的 效果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쌀市場 部分開放에 對하여 살펴보면 우리 政府은 쌀의 基礎食糧資源과 農村所得源으로서의 重要性, 農業의 脆弱한 競爭與件, 쌀 農事에 종사하는 많은 農村人口 및 食糧安保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쌀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意識이 國民情緒에 깔려있다는 點만을 감안, 쌀市場만큼은 開放이 절대 不可能하다는 立場을 固守해 왔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웃 日本을 비롯한 一部 國家에서도 우리와 같은 立場을 고수해 왔던게 事實이었다.

그러나 UR 協商이 막바지에 달한 時點에 이르러 우리를 除外한 모든 國家들이 쌀 시장 개방을 예의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상황이 급변함으로써 쌀 市場開放 不可라는 우리의 立場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 國際的으로 孤立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狀況에 빠지게 되었다. 쌀을 지키기 위해 GATT 體制를 拒否하고 國際的 고어로 혼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GATT 體制를 收用하면서 世界化, 國際化, 未來化 길로 나갈 것이냐 하는 選擇의 기로에서 우리가 國際社會로부터의 고립보다는 GATT 體制속의 競爭과 協力을 擇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卽 賦存資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自由貿易을 통해 經濟的 成長과 國富를 伸張시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쌀 市場이 一部 開放이 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被害가 當장 닥쳐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理由는 쌀 市場의 全面開放은 事實上 長期間의 輸入猶豫 期間과 關稅化 履行期間 등을 거친 후에 始作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卽 UR이 妥結되더라도 1995년부터 發效되고 이로부터 상당 期間의 輸入猶豫期間이 있게 되며 猶豫期間 終了后 關稅化로 轉換되더라도 처음에는 國內外的 價格差異만큼 關稅를 負果하고 長期間에 걸친 關稅化 履行期間 동안 每年 조금씩 減縮토록 되어 있어 우리 쌀이 輸入 쌀에 비해 價格面에서 크게 不利하지 않으며 우리 쌀의 品質과 맛이 좋다면 消費者들은 계속해서 우리 쌀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現象은 이웃 日本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쌀이 부족해 지자 우리나라 觀光을 와서 마구 사가고 있는 게 또한 事實이므로 이미 立證되고 있다 하겠다. 다만 輸入猶豫期間 동안 國內 쌀 消費量總量의 最少 比率만큼 現行 關稅로 輸入해야 하나 이를 加工業으로 消費하여 國內 쌀 市場에서 격리시킴으로써 國內 쌀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UR 協商을 통해 確保된 猶豫期間을 充分히 活用하여 品質 改良, 農業生産性 提高, 農外所得開發 등 農業構造 調整과 農漁村 生活環境 改善을 扎实히 推進해 나갈 경우 쌀 市場 開放에 따른 被害를 最少化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對應努力 여하에 따라서는 充分히 競爭力을 確保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以外, 工產品, 서비스, 金融, 및

保險 等도 마찬가지로 보아 轉化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資料: 經濟企劃院, 商工資源部 提供內容引用.

## 2) GR(Green Round)

오존층 破壞物質(CFC, 프레온 가스)의 減縮을 目的으로 한 몬트리올 議定書, 有害廢棄物의 輸出入禁止를 위한 바젤協約, 氣候變化協約 등 各種 國際環境規約 等은 GR의 登場을 豫告하는 事例로 볼 수가 있다.

先進國들은 自動車排氣가스 基準, 包裝廢棄物 規制 強化 等으로 輸出入을 制限하면서 獨自的으로 環境과 貿易을 連繫시키고 있다. 앞으로 各種 環境協約과 國家別 國內環境法에 依據한 貿易規制 措置의 發動 可能性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環境汚染을 有發하는 商品은 물론 에너지 效率이 떨어지는 商品을 輸出하는 國家는 莫大한 打擊을 입을 展望이다.

## 3) BR(Blue Round)

不當한 勤勞條件으로 生産된 商品에 대해 國際交易에서 制裁하는 多者間 協商 즉 BR도 앞으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다뤄질 展望이다. '93. 3에 제네바에서 열린 UR貿易協商委員會는 「WTO의 作業範圍에 追加的인 項目을 包含시키기 위한 提案을 論議할 수 있다」고 合意함으로써 앞으로 WTO에서 추가적 항목의 하나로 노동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可能性이 커졌다. 美國은 이번 마라케시 閣僚會議에서 追加的인 項目에 勞動基準에 관한 論議가 반드시 包含되어야 한다는 點을 提起 하겠다는 立場이다.

現在 先進國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BR의 主要內容은

- ① 急速한 經濟開發을 이룩했으나 初步的인 社會保障制度만 維持, 非教育優位를 누리는 國家에 대한 對應
- ② 兒童勞動과 在所者 勞動의 禁止
- ③ 勞動關聯法을 制定하고도 適用하지 않는

## 國家에 대한 對策

### ④ 低賃金問題 等이다.

勞働權 保護와 貿易의 連繫로 가장 큰 打擊을 입을 國家는 中國 等 아시아 后發開途國과 中南美 國家로 豫想되며 이에 따라 低賃金を 노리고 現地에 投資進出한 韓國業體들에도 不利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 TR(Technology Round)

新國際技術規範 制定을 위한 多者間協商으로 불리는 TR는 個別國家의 技術開發政策이 國家間 通商摩察要因이 되고 있다는 認識下에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를 中心으로 論議되고 있다.

TR 역시 GR, BR처럼 先進國들이 自國의 國際競爭力을 維持하기 위해 後發國들의 技術政策에 規制를 加하겠다는 의의가 숨어있다.

OECD가 거론하고 있는 科學技術規範은

① 基礎研究에 대한 政府·企業의 支援이 國際貿易의 歪曲을 招來해서는 안되며

② 個別國家의 技術政策이 透明性을 維持하고 國家間 調和를 이루도록 해야하고

③ 人力移動을 통한 技術의 發展과 擴散을 阻害하는 規制를 整備하고

④ 民間部門의 研究投資 支援에 國家間 統一된 正義와 分類가 必要하다는 內容 等이다.

## 5) CR(Competition Round)

國家間 競爭條件의 平準化를 目的으로 한 多者間 協商이다. 市場構造와 企業 慣行의 差異가 通商摩察을 惹起하고 있다는 指摘에 따라 OECD 會員國間에 論議되고 있는 問題다. OECD가 協商對像으로 삼고 있는 分野는

① 獨占禁止法이 免除되는 카르텔이 外國企業의 市場接近을 制約하는 경우

② 部品調達 等を 위해 製造業體間 맺고 있는 垂直協定이 市場接近을 放解하는 경우

③ 許可制度, 資格要件 등으로 流通體制에 影響을 미치는 政府規制

④ 公企業과 같은 獨占業體가 市場에서 優越의 地位를 濫用, 外國企業의 進出을 막는 경우

⑤ 國際的 企業引收·合併을 阻害하는 審査節次, 事業申告制度等의 差異로 加重되는 問題

⑥ 반 덤핑 措置 等 公正競爭을 阻害하는 貿易政策措置

⑦ 國籍이 다른 企業들간의 協定締結로 競爭을 制限하는 경우 等이다.

## 6)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시리즈

- 國際標準化機構(ISO-9000) 環境監査規格(ISO-18000) -

ISO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略字로 國際標準化機構라고 번역된다. 事務局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지만 중심은 英國의 런던이고 모토는 「國境을 넘는 標準化」이다.

말이 좋아서 國際標準化이지 實相은 標準이란 자기네가 定해야 한다는 英國의 自滿心이거나 歐美中心思想이 아니냐는 批判도 있다. 그러나 EU市場에 進出하려면 認證을 獲得할 수밖에 없다.

ISO는 元來 英國이나 美國이 物資를 購買할 때 購買者의 立場에서 메이커側に 製品品質의 基本이 되는 品質시스템을 要求한데서 始作되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企業內部에서의 品質管理와는 달리 企業外部인 購買者側의 要求라는데 큰 差異가 있다.

그래서 ISO 規格은 처음에는 製品에 대해서만 適用되었지만 점차 經營시스템의 規格化에 까지 이르게 되어 「ISO 9000시리즈」라는 審査基準이 만들어졌다.

가령 工場의 環境管理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 經營시스템에까지 第3者인 機關이 干與하게 되므로 簡單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BMW 等 獨逸乘用車처럼 廢車될 경우에 對備하여 再生할 수 있는 部品을 多數 使用하는 것마저 要求하게 된다면 우리 企業이 어느 程度 適應하게 될는지 걱정스럽다.

工振廳은 우리의 ISO 9000 認證機關으로 韓國標準協會附設 品質認證센터에 이어 生産技術研究院附設 品質評價센터를 承認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外國人認證機關에 依賴해서 認證을 받았으므로 時間과 費用, 그리고 努力이 過多하게 들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앞으로는 時間과 費用이 크게 줄게 되었으므로 우리 企業들이 國際化推勢에 對應해서 ISO 認證을 多數 獲得하여 品質向上의 動機가 될 것을 期待해 본다.

## 11. 結 論

氣候變化協約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國際環境協約들이 繼續發效되고 있다. 그외도 個別國家에 의한 一方的 環境規制措置들도 더욱 頻繁하게 發動되고 있다. 그 規制의 強度도 꽤 세어지고 있다.

環境保護를 위한 各種 措置들이 大部分 어떤 制裁手段으로서 대개는 貿易規制條項을 包含한다. 그 形態는 참으로 多樣하다. 즉 몬트리올 議定書에서는 特定物質과 이들 物質을 含有한 製品의 輸出入을 規制하고 있다. 例를 들면 美國은 大氣淨化法 改正을 통해서 一定 環境基準에 到達하지 못한 製品에 대해 輸入을 禁止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規制의 範圍가 製品은 물론 生産工程에 이르기까지 擴大해갈 展望인 것이다.

그리고 環境費用의 隔差分만큼 相計關稅를 負果하자는 主張도 台頭되고 있다.

이러한 貿易規制措置들은 地球環境保護란 本然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不可避한 手段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基底에는 UR以後

自國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새로운 手段으로 環境要因을 活用하고자 하는 意圖도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輸出依存도가 높고 아직은 經濟規模에서 中位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環境障壁의 克服 與否가 앞으로의 經濟發展을 左右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왜냐하면 環境을 理由로 한 貿易障壁은 一般的인 貿易規制나 國際競爭力의 弱化와는 次元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競爭國들의 輸出與件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努力如何에 따라서는 오히려 環境規制를 輸出增大의 契機로 삼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環境問題에 對한 認識을 根本적으로 轉換해야 한다. 特히 企業들은 이제 存在의 次元에서 環境問題에 接近해야 할 것이다. 環境을 考慮하지 않은 企業戰略이 海外에서는 물론 國內에서도 더 以上 通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SO시리즈에서 要求되고 있는 것과 같이 企劃段階에서부터 環境要因을 充分히 反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公害防止費用等 環境關聯 負擔을 追加적인 코스트로 여겨온 慣行을 止揚하고 企業成長을 위한 表期的인 投資로 認識해야 할 것이다. 企業內 環境組織도 強化해야 할 것이다. 急變하는 對內外 環境政策 및 環境規制 등에 대해 迅速히 對應할 수 있도록 環境關聯部署를 新設하거나 擴大하는 方向으로 企業組織을 再構成해야 할 것이다.